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74

발의연월일: 2022. 6. 10.

발 의 자:정태호·김정호·맹성규

민병덕 • 박광온 • 송갑석

윤준병 • 이성만 • 이수진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정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특례를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벤처기업이 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및 제60조제4 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제1호 중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③ (생 략)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4
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	
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1
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취득세의 <u>1,000분의 375</u>	<u>100분의 50을</u>
<u>를 2022년 12월 31일</u> 까지 경	<u>2025년 12월 31일</u>
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	2
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u>2022년 12월</u>	<u>2025년 12</u>
31일까지 경감한다.	<u>월 31일</u>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

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 3. (생략)

과 같음)	
4	
2025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